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금융소득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97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세는 납세자별로 1년간의 「이자,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 다만,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그동안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당해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그러나 '97년 5월에 처음 신고하게 되는 '96년 발생분 이자, 배당소득부터는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금융소득자에 대하여 4천만원까지는 1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하게 된다.

- 반면에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대다수 금융소득자는 종전과 같이 금융 기관에서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세율(15%)로 분리 과세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그리고 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사채이자 등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그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과세된다.

- 금융소득은 부부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된다.

■ 종합소득세는 어느 한 사람이 1년간 벌어들인 각종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종합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를 자산소득이라 한다)은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 즉, 부부 각자의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도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된 소득자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그 초과분만 종합과세된다.

(예) 본인의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고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



임현석/세무사

<표 1> 비과세저축상품 예시

저축상품명	가입대상자	비과세 요건
가계장기저축 ('98년 말까지 계약분)	세대구성원	1세대 1통장, 3년 이상 5년 이하, 월100만원 한도 적용
근로자주식저축 ('97년 말까지 계약불입분)	근로소득자	1인 1통장, 1년 이상 5년 이하, 연금여액의 30% 범위 (1천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만20세 이상 자	10년 이상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지급받는 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	1인 1통장, 10년 이상 매월 100만원 한도로 불입

천만원인 경우 부부합산 금융소득 5천만원 중 4천만원은 15% 세율로 원천 분리과세하고 1천만원만 종합과세

-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종합과세제도 시행 전보다 세금이 크게 줄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시행을 계기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을 종전의 20%에서 15%로 대폭 인하하여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모든 금융소득자는 종전세금의 4분의 3 수준으로 세부담이 크게 줄었다.

-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대상자도 종합소득세율의 인하, 각종소득 공제 수준의 인상 등으로 국소수의 고액금융 소득자 외에는 종전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은 거의 없다.
- *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1억2,380만원(연리 10% 저축원금기준 약12억원) 이하까지,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금융소득 8,100만원(원금기준 약8억원) 이하까지는 종합과세 시행전보다 세금이 줄어듬.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만원 이하	10%	0
1천만원 ~ 4천만원	20%	100만원
4천만원 ~ 8천만원	30%	500만원
8천만원 초과	40%	1,300만원

- 금융저축상품에는 비과세하거나 종합과세 않는 것도 많다.

■ 정부에서는 저축장려를 통한 국민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각종 비과세저축 제도를 두고 있다 (표 1).

* 상장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 7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차익 등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10%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저축 상품이 다양하게 취급되고 있다.

- 가계생활자금저축(1세대 1통장, 저축원금 1,200만원 한도)의 이자소득은 10% 세율로 원천분리과세(종합과세 합산대상에서 제외)
-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장학적금 등은 10%의 우대 세율로 원천징수(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

■ 장기채권(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 5년 이상) 및 장기저축(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 5년 이상)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30%(10년 이상 장기채권은 25%)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또한 '97년부터 발행예정인 사회간접자본채권(SOC장기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할 방침이다.

-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금융소득을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참고하도록 본인에게 연간 금융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다음연도 3월중에 통보하여 준다.

- 자기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는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을 때마다 기록을 해 두거나, 원천징수 영수증을 모아서 합계하면 된다.
 - 다만, 거래금융기관에 가면 통장에 이자, 배당소득 지급내용을 기재해 주며, 예금주의 신청을 받아 매년 3

월말까지 이자, 배당소득의 지급내용을 우편, FAX, PC통신 등으로 통보한다(종합과세 대상자는 세무서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보내줄 예정임).

- 1년 동안의 금융소득금액을 인별로 부부합산한 결과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면 매년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누락신고 분에 대하여는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INFORMATION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기술인 교육훈련 안내

-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력기술인(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으로 아래의 교육훈련 일정에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 설계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기술사·설계사·설계보조자 포함)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관리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되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자를 제외한 전력기술인으로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자
 - 예)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소속되어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사와 관리원을 제외한 모든 전력기술인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계 및 기능계 자격을 취득한 전력기술인(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기술능력으로 채용되어 등록된 전기분야 기술사, 공사기사 1·2급의 자격 취득자로서 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기술자 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
- 고등학교 이상의 전기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과 학력에 관계없이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자
- 4.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 엔지니어링 업체에 소속되어 전력관련 분야에서 계획·조사·설계·시험·검사 등의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전력기술인
- 5. 전력시설물의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 교육훈련일시
 - 기술사·기능장·특급기술자 : '97. 6. 20~7. 1
 - 기사 1·2급, 기능사 1·2급 및 중·고급기술자 : '97. 7. 2~7. 4
 - 기능사보 및 초급기술자 : '97. 7. 8~7. 11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공사기사 1·2급 및 전기공사기능사 1·2급의 자격을 취득한 전력기술인은 본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